

# 대구예술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11.03.25. 교무위원회)

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교육센터는 학칙 제71조 및 “경찰청고시 제2011-1호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고시”에 의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경비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명칭)** 본 교육센터의 명칭은 대구예술대학교 부설 민간경비교육센터(이하 “교육센터”한다)라 한다.

**제3조 (위치)** 교육센터는 대구시 동구 효목2동 26-2 대구예술대학교교육관 내에 둔다.

**제4조 (교육대상)** 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교육대상을 교육시킨다.

1.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
2.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
3. 기타 본 교육센터에 부합하는 교육

## 제 2 장 조직

**제5조 (조직)** ① 교육센터의 원활한 교육 및 운영관리를 위해 교육센터장, 외래교수,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교육센터의 교육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문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교육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교육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④ 교육센터의 업무분장은 교육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**제6조 (보수)**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7조 (복무)** 센터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제규정에 따른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8조 (운영위원회)** ① 교육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센터장, 고문,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9조 (업무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
1. 교육센터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육센터의 예·결산에 관한 자문
3. 교육비 책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

## 제 4 장 외래교수

**제10조 (외래교수)** 외래교수의 자격인정 범위와 행정사항은 “경찰청 민간경비 교육기관 관리지침”을 준용한다.

**제11조 (위촉)** 교육센터의 외래교수는 센터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## 제 5 장 교육과정

**제12조 (교육과정)**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(별표2)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(휴업일)**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은 휴업일로 한다. 단,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는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재정

**제16조 (회계의 기간)** 교육센터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17조 (예산 및 결산보고)** ① 교육센터의 예산은 익년 회계연도 30일전까지, 결산은 회기 완료 후 60일 이내에 소관 부처장의 협조를 받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
② 매회계연도 결산 후 잉여금이 발생할 시 교비회계에 입금하여야 한다.

**제18조 (수입원)** 교육센터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교육비 수입
2. 기타 수입

**제19조 (성과급 지급)** ① 교육센터 수익 잉여금액의 10%범위 내에서 총장의 결재를 받아 센터의 종사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.② 위 제1항 성과급의 배분은 교육센터장이 행한다.

### 부 칙

1.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.

2.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